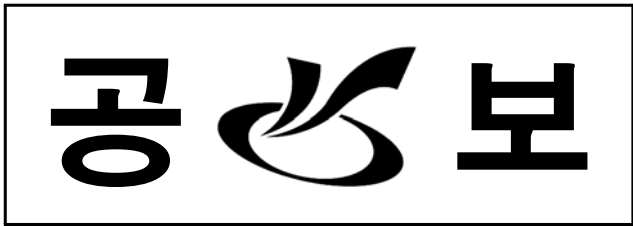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80호
2009년 2월 9일 월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8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89호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1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202호 무주부동산 공고 2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203호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계획 공고 24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20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75호선)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26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211호 공시송달공고3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219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안) 입법예고34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220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4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225호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46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9-229호 2009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명예(조기)
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 공고50

공	고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8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용역명 :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수립 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24-66번지 일원
 - 규 모 : 376,414m²
 - 용역비 : 금2,084,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보험료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과업내용 : 측량 및 현장조사,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개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도시경관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
4.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후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업체 참가자격(공고일 기준)

- 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4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식경제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각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건설부문 : 도시계획,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교통, 상하수도, 토목품질시험, 조정
- 나.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에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상기 자격을 갖춘 타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급적 공고일 기준으로 우리 시에 주된 영업소를 가진 1개 업체 이상(참여지분을 30%이상)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권고합니다.(지역업체 가점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식경제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도시계획,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교통을 전문분야로 신고한 업체야 하며 기술사를 보유하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평가대상자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용역업체 선정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과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8, 2008.12.31)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08.7.7)을 기초로우리구가 정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합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점수가 85점이상인 참가업체가 5개사 이상일 경우 상위 5개사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며, 기준이상인 참가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순으로 5개사(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제외)를 선정합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배부 : 우리구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에 게시합니다.

7. 용역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1) 일 시 : 2009. 2. 17. 09 : 00 ~ 18 : 00
- 2)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 3) 구비 및 제출서류
 - 엔지니어링주체활동 신고증 및 등록수첩 사본, 기타 참가등록증사본, 해당측량업등록증
 - 참가업체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일 경우)
 - 인감(사용인감을 별도로 지참할 경우 사용인감제)
 -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 ※ 제출된 평가서를 전산화(스캔)하여 CD(1개) 제출
- 4) 제출방법 : 직접제출
 -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현장설명은 등록시 안내문 배부로 대신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통보 및 입찰안내

- 1) 심사결과통보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 2) 입찰안내 : 추후 입찰 안내 별도 공고 예정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1)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이나 업체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투입예정기술자는 계약 후 임의 교체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원본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4)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발주청에제출된 관계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6) 제출서류는 등록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며, 만일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는 해당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우리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하여야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7)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불참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8)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 9)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10)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032-560-478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tice No. 2009-17, Seo-gu, Incheon Metropolitan City

Notice for Service Project Execution Plan and Submission of the Project Execution Capability Evaluation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21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the Articles 37 and 38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act and the Article 13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Regulation, Seo-gu Office invites qualified companies to submit the project execution capability evaluation application documents to participate in the bid for the 'Gyeongseo Zone 3 Urban Development Project Plan' hosted and executed by Seo-gu Office, Incheon Metropolitan City, Korea.

Feb. 3, 2009

Mayor of Seo-gu Office, Incheon Metropolitan City

1. **Name of Project:** Planning for Gyeongseo Zone 3 Urban Development Project
2. **Administrator of Project:** Seo-gu Office, Incheon Metropolitan City
3. **Description of the Project**
 - Location : 124-66 Gyeongseo-dong, Seo-gu,
Incheon Metropolitan City
 - Area : 376,414m²
 - Amount : KRW 2,084,000,000 (includes VAT and insurance)
 - Duration : Within 10 months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k
 - Description of the Work: Survey and site investigation, ground survey and soil test, development planning (change), section unit plan, landscape plan, basic and execution design and park construction plan

4. **Date of Bid:** The qualified companies will be informed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Execution Capability Evalu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38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5. Qualifications for the Submission of the Project Execution Evaluation Documents (as of the date of this notice)

- A. A company that is reported as an engineering company to the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for each of the following area and has engineers for each area according to the Item 1, Article 4 of the Engineering Technology Promotion Act.
- Construction: Urban planning, soil and foundation, civil engineering structure, road and airport, transportation, water and sewage, civil engineering quality test and landscape.
- B. A company that is registered as a general surveyor or public surveyor to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ccording to the Article 39 of the Survey Act.
- C. If the qualified company in other city applies to the bid, we suggest the company jointly participate in the bid with one or more of the company whose business premises is with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s of the date of this notice (the participating ratio shall be over 30%). (The additional points for the companies within the concerned city will be given according to the Municipality Technology Project Qualification Evaluation Criteria).
- The joint applicants shall be the engineering companies applied to the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and their major areas of businesses shall be urban planning, soil and foundation, civil engineering structure, roads and airport and transportation. If they do not have a consultant engineer for the concerned area, their supervising engineers cannot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 The joint applicants shall submit the joint work contract along with the evaluation documents.

6. Project Execution Capability Evaluation and Award of the Bid

A. We select the qualified candidates according to our Project Execution Capability Evaluation Guidelines based on the Article 21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the Articles 37 and 38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act, the Article 13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Regulation of the same act, Detailed Project Execution Capability Evaluation Guidelines (Notice No.2008-848, Dec. 31, 2008,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the Chapter 4 The Technology Project Evaluation Guidelines of the Municipality Award Decision Guidelines (Regulation No. 176, July 7, 2008,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B. If more than five companies acquire over 85 points from the result of the project execution capability evaluation, we will select five of them orderly from the highest points. If the number of companies acquiring 85 points or higher is less than five, we will select five companies orderly from the highest points. (except when the total number of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bid is less than five).

C. For project execution capability evaluation from preparation guidelines and distribution of evaluation guidelines, please visit our web site (<http://www.seo.incheon.kr>).

7. Registration for the Bid and Submission of the Project Execution Capability Evaluation Documents**A. Registration and Submission**

1) Deadline: 09 : 00 ~ 18 : 00, Feb. 17, 2009

2) Address: City Development Division, Seo-gu Office, Incheon Metropolitan City

3) Required Documents

- Proof of engineering business application, copy of engineering registration book, copies of proof of the previous engineering work and copy of surveyor license.

- Copy of corporate seal registration, corporate register and business license (if the company is incorporated)
- Corporate seal (If a copied corporate seal is to be used, submit the registration of the copied seal)
- Letter of attorney, proof of employment and ID (In case of the employee of the company or other third person appointed by the company submits application for the company)
- 1 copy of joint agreement
- 2 copies of project execution evaluation form (includes original form)
- ※ The evaluation form shall be scanned and stored in one CD

4) Method of submission: By visit

- ※ We do not accept mailed applications, and the instructions distributed at the application shall be the information about the site.

B. Result from the Project Execution Capability Evaluation and Bid

- 1) Result from the evaluation: The qualified company will be informed about the result.
- 2) Bid: Details about the bid will be notified later

8. Others

- 1) All documents requiring proof or verification by the related authorities shall have proof or verification from them. Otherwise, they will not be accepted as valid documents.
- 2) All engineers indicated in the project execution capability evaluation documents shall be identical to the actual engineers who can commit during the whole period of the time of the project as they cannot be replaced with others after the signing of the contract.
- 3) The seal used by the applicant for the proof of the originality of the seal shall be the registered seal of the owner of the company.

- 4) Only the companies registered for the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an submit the project execution capability evaluation form.
- 5) All cost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the project execution capability evaluation form shall be paid by each applicant. No submitted documents shall be returned.
- 6) The contents in the submitted documents shall be true according to the project execution capability evaluation criteria. If any part of the contents related to the company is not true, the questioned applicant shall be excluded from the list of applicants, or we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and the questioned applicant cannot raise any question about the result.
- 7) If this bid is notified again as a result of the absence of the qualified applicants to the bid, these applicants cannot apply for the project execution capability evaluation again.
- 8) The experience and calculation of the terms in the evaluation form shall be based on the date of this notice.
- 9) Other details shall be based on the 'Project Execution Capability Criteria.'
- 10)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is notice, please contact (☎032-560-4784) City Development Team, City Development Division, Seo-gu Office,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89호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1. 개정취지**

- 인천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12조(사용료 등의 감면) 감면 대상자중 일부 감면대상자에 대한 법적 용어 및 적용기준 적용이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적용코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3항의 내용중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100분의 30,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감면 조항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감면 조항으로 수정
-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및 별표 10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00분의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13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방침(案)

1. 개정목적

- 인천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12조(사용료 등의 감면) 감면 대상자중 일부 감면대상자에 대한 법적 용어 및 적용기준 적용이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적용코자 함.

2. 개정근거

- 감면 적용 대상자 중 법적 용어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감면 조항에 대한 개선·보완

3. 개정(안)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3항의 내용중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100분의 30,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감면 조항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감면 조항으로 수정
-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및 별표 10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00분의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4. 행정사항

- 입법예고 : 2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 2월중
- 의회 의결 : 3월중
- 개정조례 공포 : 4월중

자 치 법 규 정 비 안 요 약 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 인천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중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중 상위법령과 상이한 용어 및 감면 조항에 대한 개선 및 보완 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사용료 등의 감면중 제3항의 담서 조항중 -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100분의30 감면,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감면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30,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 (제12조 3항)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 계 법 령 발 취	“별 지 참 조”
관 련 사 업 계 획	“해 당 없 음”
예 산 수 반 사 항	“해 당 없 음”
기 타 참 고 사 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 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단서조항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100분의30, 등록 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30, 국가유공자,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현 행	개 정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략 ② 생략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100분의 30,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

관련법령 발췌

제86조 (고궁등의 이용지원 <개정 2008.9.26>)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1991.12.31, 2002.12.30, 2008.9.26>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02.12.30, 2004.3.17, 2008.9.26>
-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02.12.30, 2008.9.26>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 관련)

시설의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서구시설관리공단이 2008. 12. 30일자로 2본부제(2상임이사)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공단이사장의 직무대행을 상임이사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과 책임경영 실현
-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소집권한과 의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신속한 업무대응 체계를 확립

2. 주요내용

-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9조(이사장)제2항
 -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의 직제순에 따른 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로 개정함.
-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14조(이사회)제3항
 - 단서 중 “당연직 이사 중 총무국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총무국장이 그 의장이 된다.”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2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032-560-4056/
Fax032-560-4059】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
공단 설치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의 직제
순에 따른 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4조제3항 단서 중 “당연직 이사 중 총무국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를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총무국장이 그 의장이 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이사장) ① (생 략)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 직 이사 중 총무국장이 그 직을 대 행한다.	제9조(이사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의 직 제순에 따른 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 행한다.
제14조(이사회) ①·② (생 략)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 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연직 이사 중 총무국장이 이사회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이사회)①·②(현행과 같음) ③----- ----- -----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총무국장이 그의 장이 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202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9년 2월 10일 ~ 2009년 8월 10일 (6개월간)
2. 신 고 처 : 인천광역시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32) 560 - 416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선 (임시지번)	지 목	면적(㎡)	비 고
1	백석동	239지선 (239-4)	구거	431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3호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용자계획공고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용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용자계획

- 가. 용자금 총액 : 611백만원 이내
- 나. 용자금 용도 : 도시가스수용가 신규시설 설치자금
- 다.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용자금 소진 시까지(연중 수시)
- 라. 대출한도액 : 가구당 최고 500만원 범위 내(실비용)
- 마. 취급은행 : 신한은행 서구청 지점
- 바. 상환기간 : 3년 균등분할상환
- 사. 대출금리 : 년 7%(자부담 2%, 구지원 5%)
- 아. 자격요건 : 2009년 도시가스수용가 신규시설 설치자로서
관내 해당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주여야 함

2. 용자대상자 선정

- 가. 용자불가자를 제외한 신청인에 대하여 2회/월 용자대상자로 추천
- 나. 용자대상추천자로서 신한은행 여신규정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
- 다. 용자제외 대상 : 무허가(위법)건축물, 아파트, 공급관이 없는 지역,
신청인이 건물주가 아닌 경우

3. 용자대상 우선순위

- 가. 단독주택
- 나. 다가구주택
- 다. 다세대(연립주택)
- 라. 상가주택(주택부분)

4. 서류 제출처 및 처리절차

- 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민은 사전에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인천도시가스사(주)에 확인(☎570-7806)
- 나. 서구청 기업지원과, 동사무소 또는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
- 다. 구비서류(신청서, 시공계약서 및 도시가스접수필증 사본 1부)
- 라. 구에서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용자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추천결과를 신청인 및 취급은행에 통보

5. 기타사항

- 가. 자금의 상환, 사후관리,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 사업기금설치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협약은행과의 협약서에 의거 시행.
- 나. 문의처: 서구청 지역경제과(에너지관리팀, ☎560-4463)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20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75호선)**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중로1류75호선, 사업명:석남동 중1-75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 및 건설과(560-452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52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도로(중로1류75호선)
【명칭】 석남동 중1-75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L = 290m, B = 2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9. 2월 ~ 2009.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9.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용지 조서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석남동	223-529	유지	1,569	1,311	시유지	인천광역시			
2	석남동	223-456	유지	3,656	3,656	인천 서구 석남동 223-603	주식회사 에스틸 외 3인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 (주안복지점, 송도지점)	
3	석남동	223-692	유지	408	408	구유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4	석남동	223-674	도로	500	500	시유지	인천광역시			
5	석남동	223-721	잔종지	147	147	인천 서구 석남동 223-384	명정공업주식회사 외 1인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인천중앙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산동지점)	
						이하여백				
	계			6,280	6,022					

지장물 조서

연번	토지 소재지		지장물 조서				지장물 소유자		비고
	동명	지번	용도	구조	전체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1	석남동	223-529	도로	콘크리트 포장	A=1,569㎡	A=1,311㎡	에스틸, 건영스틸, 삼산실업 공동포장		
2	석남동	223-529	사무실	콘테이너	A=18㎡ (L=6.㎡ B=3m)	A=18㎡ (L=6.㎡ B=3m)	중구 향동7가 1-51	경인향운노조	
3	석남동	223-529	창고	치량탐재용창고	A=7.5㎡ (L=3m B=2.5m)	A=7.5㎡ (L=3.㎡ B=2.5m)	석남동 223-521	대산중기 (성용옥)	
4	석남동	223-529	창고	치량탐재용창고	A=7.5㎡ (L=3m B=2.5m)	A=7.5㎡ (L=3.㎡ B=2.5m)	석남동 223-529	뉴웰드 남시(김병우)	
5	석남동	223-529	담장	미관 휀스	L=26.2m H=1.55m	L=26.2m H=1.55m	석남동 223-642	김창백	
6	석남동	223-456	창고	조림식골재/허브	A=552.69㎡ (L=62.1m B=8.9m)	A=552.69㎡ (L=62.1m B=8.9m)	석남동 223-603	주식회사 에스틸	
			경비실	콘테이너박스	A=18.3㎡ (L=6.1m B=3m)	A=18.3㎡ (L=6.1m B=3m)			

지장물 조서

연번	토지 소재지		지장물 조서					지장물 소유자		비고
	동명	지번	용도	구조	전체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창고	조립식골재/H빔	A=265.22㎡ (L=29.8m B=8.9m)	A=265.22㎡ (L=29.8m B=8.9m)				
			휴게실	콘테이너박스	A=36㎡ N=2개 (L=6m B=3m)	A=36㎡ N=2개 (L=6m B=3m)				
			담장	벽돌(H=1.3)	L=7.0m H=1.3m	L=7.0m H=1.3m				
			기둥	벽돌 (1.0 x 1.0 x 1.7)	N=2개	N=2개				
			담장	철재	L=19.3m H=3m	L=19.3m H=3m				
			창고바닥 및 도로	콘크리트	A=3,656㎡	A=3,656㎡				
			화단	N=3개소	노티: 1주(15CM이하) 노티: 2주(15CM이하) 소나무: 1주(15CM) 회양목: 30주	노티: 1주(15CM이하) 노티: 2주(15CM이하) 소나무: 1주(15CM) 회양목: 30주				
			고물적재 박스	N=2개소	A=6*2.5*2개 =37.5㎡	A=6*2.5*2개 =37.5㎡				
			노상자재 다이	N=5개소	A=6*2.5*5개 =75㎡	A=6*2.5*5개 =75㎡				
			자재	공구및 기계류	1식	1식				

지장물 조서

연번	토지 소재지		지장물 조서					지장물 소유자		비 고
	동명	지번	용도	구조	전체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7	석남동	222-456	창 고	천막, 파이프/허브	A=297㎡ (L=33m B=9m)	A=297㎡ (L=33m B=9m)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1-2 현대홈타운 5단지 506-1201	이천웅		
			제 품	목재제품	1식	1식				
			바 닥	콘크리트 포장	A=297㎡	A=297㎡				
8	석남동	223-456	차 고	콘크리트	1식	1식	남구 관교동 13-6 삼환아파트 101-1102	이길구		
9	석남동	223-692	담 장	판넬(H=.3.4)	L=19.8m H=3.4m	L=19.8m H=3.4m	남구 관교동 13-6 삼환아파트 101-1102	이길구		
			담 장	판넬(H=.5.1)	L=32.9m H=5.1m	L=32.9m H=5.1m				
			담 장	블럭(H=.0.5)	L=52.7m H=0.5m	L=52.7m H=0.5m				
10	석남동	223-721	창 고	콘테이너박스	A=12.3㎡ (L=2.5m B=4.9m)	A=12.3㎡ (L=2.5m B=4.9m)	석남동 223-384	명정공원주식회사 외 1인		
			담 장	블럭	L=7.4m H=1.7m	L=7.4m H=1.7m				
			담 장	블럭	L=38.6m H=1.7m	L=38.6m H=1.7m				
			엘리베이터	철재	N=1개	N=1개				
			창 고	조립식골재/허브	A=111.7㎡ (6.4*9.4/2 +6.1*5.3/2)	A=46.2㎡ (구적(예의함))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2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사항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9. 2. 6 ~ 2009. 2. 20 (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업종	교부번호	영업자명	업소명	소재지 주소	위반사항	행정처분
세탁업	신현007	김덕임	청명세탁소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3-7	영업시설물 멸실	영업소 폐쇄
“	신현003	심용우	대구사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5-7	“	“
“	연희008	홍남숙	크린랜드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36-4	“	“
“	검단-40	김희곤	풍림세탁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9-1	“	“
“	석남 1-004	손도현	백합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81-11	“	“
“	검암-13	박종선	슈즈쿨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08-1 장은프라자 120호	“	“
“	가좌 4-004	한덕재	백양세탁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2-11	“	“
“	가정 3-009	정성임	성민세탁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65-2	“	“

4. 공고장소 : 서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www.seo.incheon.kr)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032-560-4382)

6.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

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09년 2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219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폐지 이유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 법규에 의거하여 일부 저촉되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목적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2008.11.24 제명 변경으로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인용 조례명 수정함(안 제1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업자를 보고·검사 대상으로 포함함(안 제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 법규에 저촉되는 과태료 처분 조항을 대폭 삭제하고 상위 법규를 준용하는 조항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 및 시행규칙 폐지 사항에 대하여 의견에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지 (서구청 청소행정과)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심곡동 244번지)
- 전화번호 : 032-560-4426
- FAX : 032-560-4399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내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 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자원에 관한 사항

제3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조치명령 이행완료 신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한 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행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품목으로 정한다.

1. 종이류
2. 병 류
3. 캔 류(주석·알루미늄 구분)
4. 금속류
5. 플라스틱류
6.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유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 등

- 2.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
- ② 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별표 1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과태료 처분) 이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만원)			비 고
	1차	2차	3차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목표에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만원)			비 고
	1차	2차	3차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불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불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마.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이상인 경우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만원)			비 고
	1차	2차	3차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사.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법 제14조)	50	150	300	
5.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6.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의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법 제22조제3항)	50	100	300	
7. 빈용기보증금 중 미반환보증금을 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법 제22조의2제1항)	200	250	300	
8.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용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한 자(법 제25조의2)	100	200	300	
9.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3)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만원)			비 고
	1차	2차	3차	
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고품질 연료 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고품질 연 료제품을 공급하는 자	200	250	300	
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00	200	300	
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조한 자	200	250	300	
10.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 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200	250	300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11.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12.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 조제2항)	30	50	100	
13.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 록한 자(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 도에서 산입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220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 및 시행규칙 폐지 사항에 대하여 의견에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지 (서구청 청소행정과)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심곡동 244번지)
- 전화번호 : 032-560-4426
- FAX : 032-560-4399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공고 제2009-225호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취지

-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시행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현 실정에 타당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부분개정함. (안 제5조의2)
 -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민·관 혼합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296) 및 FAX(560-4979)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붙임)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 정 이 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시행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현 실정에 타당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민·관 혼합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안 제5조의2제1항)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산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계법령 발취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 인천광역시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 산 수 반 사 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운영하거나 민·관 혼합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u>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u> ② (생 략)	제5조의2(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 <u>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민·관 혼합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u> ② (현행과 같음)

2009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계획인원

- 명예퇴직 : ○명
- 조기퇴직 : ○명

2. 명예(조기)퇴직 신청

가. 신청대상

- 명예퇴직 : 공무원연금법상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제외)
- 조기퇴직 : 실제 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제외)

나.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까지 (수시신청은 퇴직예정일 20일전)

- 명예퇴직 예정일 : 매월 말 (※ 수시신청은 퇴직 희망일)

※ 수시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수당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다. 신청절차

- 명예·조기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첨 「명예·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서」, 「명예·조기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3. 대상자 선정 및 추천

- 가. 소속기관(부서)에서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상위직, 장기근속자를 우선 추천해야 함.

나. 대상자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조기퇴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①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③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 ④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⑥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 명예전역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 ⑦ 수당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 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 ⑧ 그 외 ①내지 ⑦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

추천된 명예·조기퇴직 대상자는 당해 월 21일 이후 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명예·조기퇴직 대상자를 월 단위로 최종결정하며, 그 결과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5.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의 취소

명예·조기퇴직 신청기간 이후 명예(조기)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을 취소함.

6. 수당지급

명예·조기퇴직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결정이후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7.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 ①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②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③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자가 지급 받은 경우

8. 수당 산정방법 (2009년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 명예퇴직

정년잔여 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월봉금액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월봉금액의 반액 × $\left[60 + \frac{\text{정년잔여월수} - 60}{2}\right]$
3. 10년을 초과하는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미지급)

※ 월 봉급액 산출방식

☞ 호봉제 공무원 : 봉급표상 봉급액의 81%

예시) 봉급표상 봉급액 $\times 0.81 \times 1/2 \times$ 정년 잔여월수 (위산출방식에 의함)

☞ 연봉제 공무원 : 연봉월액 $81\% \times 66\% \times 1/2 = [(연봉액 - 성과연봉) / 12] \times 81\% \times 66\% \times 1/2$

예시) 연봉월액 $\times 0.81 \times 0.66 \times 1/2 \times$ 정년 잔여월수 (위산출방식에 의함)

○ 조기퇴직 :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6개월분 지급

9. 기타사항

가. 소속기관장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조기퇴직의 대상자로 추천 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등과 같이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는 이를 엄격히 심사 하여 부적격한 대상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조하시거나 총무과 인사팀(560-4102)으로 문의 바랍니다.

10. 제출서식

- ① 자필 명예(조기) 퇴직원 1부
- ②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서 1부
- ③ 자필 사직원 1부
- ④ 퇴직자 보안서약서 1부
- ⑤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1부
- ⑥ 계좌입금통장 사본 1부
- ⑦ 주민등록등본 1부.

명 예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 .

위원인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

① 소 속		② 공무원 구 분	☐ 일반직 ☐ 특정직 ☐ 기능직	③ 직 급 또는 등급	
④ 성 명	(한글)	⑤ 주민등록번호			
	(한자)	⑥ 주 소	□ □ □ - □ □ □		
⑦ 전화번호 (자택)		⑧ 근속년수	년 월 일	⑨ 정년일	년 월 일
⑩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⑪ 수당청구액		
⑫ 정년잔여 기간(수당 지급대상 기간)			⑬ 산출내역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 1. 명예퇴직원 및 인사기록카드사본 1부.
 2.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소속행정기관 작성) 1부.
 3. 기관장 확인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4조 단서규정 해당자) 1부.

2009. . .

신청인 (인)

※ ⑭ 확인	인사 담당	(인)	연금 담당	(인)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9. .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기재상 주의사항 :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또는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조 기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사유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 .

위원인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서

① 소 속		② 공무 원 구 분	☐ 일반직 ☐ 특정직 ☐ 기능직	③ 직 급 또는 등급	
④ 성 명	(한글)	⑤ 주민등록번호			
	(한자)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자 택)		⑧ 근속년수	년 월 일	⑨ 정 년 일	년 월 일
⑩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⑪ 수당청구액	
⑫ 정년잔여 기간(수당 지급대상 기간)			⑬ 산출내역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 1. 조기퇴직원 1부.
 2. 조기퇴직자 요건심사서 (소속행정기관 작성) 1부.
 3. 기관장 확인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규정 제4조 단서규정 해당자) 1부.

2009. . .

신청인 (인)

※ ⑭ 확인	인 사 담 당	(인)	연 금 담 당	(인)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9. .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합니다.

2009. . .
(인)

귀하

※ 기재상 주의사항 :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또는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인적사항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해당(이상)유무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지 여부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인지 여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인지 여부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인지 여부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인지 여부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인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 공무원 제외)이 되기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 인지 여부(장기 위탁교육훈련 진행중인 자 포함)		
	명예퇴직원 자필작성 여부		
	그밖에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여부		

인천광역시서구 인사담당 직급 성명 (인)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1. 대 상 자

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2. 퇴직사유 :

3. 보안교육 실시

○ 일 시 : 2009. .

○ 장 소 :

○ 교 관 :

○ 교육내용 :

4. 보안서약서 징구 : 별첨

퇴 직 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09. . 일부로 퇴직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이 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09. .

○ 서 약 자 : (인)

○ 서약집행관 소속·직위 :

직급 :

성명 : (인)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현황

(단 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특 정 직	기 능 직	비고
			소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급 이하	연구 관	연구 사	지도 관	지도 사			
근 속 기 간 별	계																
	20년~ 25년미만																
	25년~ 30년미만																
	30년이상																
정 년 잔 여 기 간 별	계																
	1년																
	1년~ 2년미만																
	2년~ 3년미만																
	3년~ 5년미만																
	5년~ 10년미만																
	10년이상																
퇴직수당(원)																	

※ 특정직도 직급별로 구분 작성

※ 명예퇴직수당지급과 관련한 예산현황(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향후집행예정액 등) 별첨

2009년도 월별 명예(조기)퇴직 추천자 명단

(기관명 :)

소 속 (실·과·소동)	직위	직급	성 명	주민번호	근속 기간	정년 구분 (세 또는 년)	정년 예정일	정년 잔여기간	수당지급 예정액 (호)	퇴 직 희망일	비 고 (취업등)

※ 근속기간 : 연금법상 재직기간

※ 반드시 Ms-Excel 파일로 작성하여 E-mail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

【전 본】

사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합니다.

2009년 월 일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